

202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초안)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

2026. 1.

(초안)

※ 이 편람은 2028년에 적용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의 (초안)이며,
최종 평가시행(2028년) 전까지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I. 202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2. 평가 개요	2
3. 평가단계와 절차	7
II. 202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8
1. 2028년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8
2. 2028년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54
3. 2028년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103

제 I 장

202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평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 2
 - * 2014년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사-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26년 6월. 13일부터 수련시설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평가 추진방향

- 2028년 평가대상 기간 중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2027년 12월 완료)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차 개별 통지 후,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
- 미흡이하 시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련시설의 전반적 수준 제고

2.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시설** : 평가대상 기간 중 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평가대상 시설의 범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8조)**

- ①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
- ②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지기간을 제외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수련시설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폐지가 진행 중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휴지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휴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평가한다.
- ⑤ 평가대상 기간 또는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휴업한 시설로서 관련 사실을 입증한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평가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026. 1. 1 ~ 2027. 12. 31(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간)

* '26년도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27.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1년 이상 경과한 시설)

○ **평가영역** :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 발전 등 총 5개 영역

○ **평가방법** :

- 수행기관이 주관하고 청소년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지표, 평가대상시설, 평가등급 심의·확정 기구인 평가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 서면평가: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은 평가편람에 수록된 지침과 기준 등을 참고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근거자료가 많은 것은 리스트만 작성 후 현장에서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표와 근거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 현장방문평가: 현장방문평가는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의 사실 여부 확인과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근거서류 및 현장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준비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보충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직원에 대한 면접 수행
- 현장방문평가의 절차: ①시설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면담, ②시설현황 브리핑, ③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

○ **평가등급**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4단계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부여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100점 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미만

○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관련 규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
 -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1항 해당 사고(건) 발생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처벌(분)을 받은 경우
 -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과태료) 처벌(분)을 받은 경우
 -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 기준 〉

구 분	기 준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 제1항 사고(건)발생	10점 감점 또는 등급 조정
②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벌칙)	유죄 확정시 등급 조정
③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 조정
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급 조정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1항 해당 사고(건)의 범위

-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등 11개 행위)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처벌(분)을 받은 경우

-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수련지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참가인원 일정규모 이상, 위험도 높은 수련활동의 인증)
 2.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과태료) 처벌(분)을 받은 경우

-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감독)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
1.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제18조의2(안전교육)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의3.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20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0. 제25조(보험 가입)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1.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 12.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최하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최하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등급을 하향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1개 등급 하향 조정 /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2개 등급 하향 조정
- * 1차 종합안전위생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수련시설 종합평가 종료이전(~'24. 11월)에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점검기관에 재점검을 요청하여 개선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분야를 '적합'으로 인정
- *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 중 개선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시설 종합평가 종료 이전에 개선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분야 점검기관에서 재점검을 통하여 개선이 확인 ('26년 1월 ~ 6월)된 경우 등급 조정 가능

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 시설에 지적사항 개선 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성평등가족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 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 수련시설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성평등가족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연 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 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지적사항 개선 추진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미흡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컨설팅

○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성평등가족부)

- 최우수시설 : 평가결과 우수 등급 시설 중 평가심의위원회 선정,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포상대상시설 : 최우수 시설 중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시설 중에서 선정(시설유형 고려)

3. 평가단계와 절차

평가준비 단계	사업설명회 개최	202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 설명회 개최
	↓		
평가실시 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2028.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서면평가 실시	2028.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심사
	↓		
	현장평가 실시	2028.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8.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종합안전점검결과 반영 및 평가결과 공개	2028.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 평가결과 공개
↓			
후속조치	평가결과 조치	202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시설 현판 제작 및 발송 ▪ 우수 시설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 시설별 법적 위반사항 정리
	↓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 II 장

202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1. 2028년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9개 항목 - 25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II-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1. 운영 및 관리 체계 (13점)	1.1 기관 운영 계획	5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6	3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 체계	8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2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5	0.8	4	
			1.2.3 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수준	5	0.4	2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20점)	2.1 청소년 이용	7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5	0.6	3
2.1.2 이용 청소년의 안전관리				5	0.8	4	●
2.2 프로그램 운영		13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5	1.0	5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의무 이행 여부	5	0.8	4	●
			2.2.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5	0.8	4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3. 인사 및 조직 (28점)	3.1 직원확보	14	3.1.1 직원 확보 수준	5	0.8	4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1.0	5	●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1.0	5	●
	3.2 직원 교육 및 복지	14	3.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5	0.8	4	
			3.2.2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1.2	6	●
			3.2.3 직원의 복리후생	5	0.8	4	
4. 시설 및 안전 (29점)	4.1 시설환경	8	4.1.1 시설기준	5	1.0	5	●
			4.1.2 생활관의 쾌적성	5	0.6	3	
	4.2 안전관리	21	4.2.1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5	1.0	5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1.0	5	●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0.8	4	●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6	3	●
			4.2.5 안전교육 및 관리	5	0.8	4	●
	5. 시설운영 발전 (10점)	5.1 시설운영 발전	10	5.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 개선 조 치 이행 수준	5	1.0	5
5.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 II-1.1.1 운영 및 관리체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의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 2021년부터 2027년)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점수	• 평정 점수 : 평균 ()점 (최대 5점~최하 1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6 = 평균 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적인 사업별 추진방안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 (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청소년 정책목표와 기타 운영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한 경우 인정 - 평가요소 3): 분야별 추진계획이라 함은 조직, 프로그램, 안전, 재난대책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의미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수련원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27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27년 12월로 종료되어 2027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분원 형태의 시설의 경우 본원 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 분원의 중장기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 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 중·장기 발전계획의 평가요소 검토시 청소년수련원의 전체 규모(수용정원, 시설규모 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의 경우 평정기준에 가점 부여가 가능함.
평가자료	(중·장기)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

표 II-1.1.2 운영 및 관리체계(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수련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2027년 연간 운영계획										
평정점수	• 전체 평균점수 : 전체 평균 ()점 (최대 5점~최하 1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사항목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5	4	3	2	1
	연도별 평균 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A) 점					(B) 점				
$\frac{(24\text{년평균 점수}(A) + 25\text{년평균 점수}(B))}{2}$ $= 2\text{년간 평균 점수} = \text{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 연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운영기관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 2026년과 2027년 계획서를 별도로 평가함
<p>평가자료</p>	<p>연간(2026, 2027)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서</p>

표 II-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만족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수련원 명의의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td> <td></td> </tr> <tr> <td>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td> <td></td> </tr> <tr> <td>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원 명의의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원 명의의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원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의 제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규정 범위 및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획일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평가요소 2)의 경우 관련 자체적인 규정 관련 위원회 등(이사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요소 3)의 경우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5종 이상의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경우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5)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수련관은 제외(신고로 인정)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또는 위탁에 관계없이 청소년수련관별로 자체적인 명의로 고유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동일 재단 산하에 다수의 수련관, 문화의집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재단내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는 인정함. 1) 지자체 직영 및 지자체 공단/지자체 산하 운영법인(재단) 소속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이 직영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재단 등 법인 소속 시설인 경우, 관련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또는 재단 규정 등도 인정하여, 이 경우 평가요소 1) 수련원 명의로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도 인정함. - 평가요소 3)의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실제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이거나 독자적인 사무편람, 운영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4)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실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2) 위탁시설(/청소년단체 위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의 규정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이 규정화된 경우 인정(내용과 관리 체계를 평가) - 수탁한 수련시설 자체의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 불인정 ※ 위·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규정(정관 성격의 규정을 말함) 재개정 시 시설 자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한 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추천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p>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원 운영규정집,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등

표 II-1.2.2. 운영 및 관리체계(회계 관리의 체계성)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가지 항목 이상 해당 또는 회계법인 감사실시												
	우 수(4)	3가지 항목이 해당												
	보 통(3)	2가지 항목이 해당												
	미 흡(2)	1가지 항목이 해당												
	매우미흡(1)	0가지 항목이 해당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평가요소</th> <th style="width: 3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회계 관련 필요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td> <td></td> </tr> <tr> <td>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 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td> <td></td> </tr> <tr> <td>5)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td> <td></td> </tr> </tbody> </table> <p>※ 회계연도 후 외부의 회계법인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위 5개 평가요소에 상관 없이 5점 부여 (2년에 1회 감사를 받을 경우 3점부여)</p>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 관련 필요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 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 관련 필요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 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가 비치 여부와 수입 및 지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함 -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에 공개여부를 평가함 													
	평가자료													
	회계장부(원장), 회계 및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외부감사실적 자료, 예·결산 자료 등													

표 II-1.2.3. 운영 및 관리체계 (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3 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가지 항목 해당												
	보 통(3)	2~3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1가지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3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td> <td></td> </tr> <tr> <td>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2가지 방법 이상)</td> <td></td> </tr> <tr> <td>4)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td> <td></td> </tr> <tr> <td style="color: red;">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2가지 방법 이상)		4)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2가지 방법 이상)														
4)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수련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수련원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 4)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란 홍보내용이 시설 및 참가자 모집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나 주요성과를 알리는 홍보(청소년의 활동 참여의 중요성, 참여 후 긍정적 변화 등)를 의미함. <li style="color: red;">- 평가요소 5)의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농산어촌지역 등 현장실습 참여 자체가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음.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대상 및 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표 II-2.1.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연간전체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이용자 수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70% 이상
	우 수(4)	60% 이상 ~ 70% 미만
	보 통(3)	50% 이상 ~ 60% 미만
	미 흡(2)	40% 이상 ~ 50% 미만
	매우미흡(1)	40% 미만
평가요소	$\frac{2026\text{년}\sim 2027\text{년}\ \text{연간}\ \text{청소년}\ \text{이용자}\ \text{수}\ (\)\ \text{명}}{2026\text{년}\sim 2027\text{년}\ \text{연간}\ \text{전체}\ \text{이용자}\ \text{수}\ (\)\ \text{명}} \times 100 = [\quad \%]$ <p>※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율'과 다름에 주의 필요</p>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원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부지 내 전체 공간 대상으로 시설 공간대관, 활동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함) 1) 전체 이용자 수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이용자 수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청소년 수는 이용자에게 포함하되, 그 가족 수는 연간 전체 이용자(숙박자) 수에서 제외함. 청소년 이용자 수 범위 : 청소년기본법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주체별 범위 : 수련원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총 이용자 수 산정 : 일자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할 경우 당일 이용자 수가 제외되기 때문임) 산정의 예 : 2027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 학생이 200명이고, 2027년 1월 3일~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 학생이 100명인 경우, (200명 × 3일) + (100명 × 3일) = 900명 2) 이용자 수 포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포함하되, 운영시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별 출석인원을 합산함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실시된 청소년어울림마당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의 참여 인원은 포함 	

	<p>3) 이용자 수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 내에 입주한 타 기관 이용자 제외(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 축제, 전시 등 행사 프로그램의 단순 관람객은 제외(실인원 산출 문제 등 고려) -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야외공간의 임의적 이용자는 제외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는 경우 인정) - 청소년수련원 외부에서 진행된 캠프, 국제/지역 간 교류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또는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활동프로그램 참가 인원은 제외함 -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시청 조회수)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해당 게시물 좋아요 수)의 이용자수는 이용률의 이용자 수에서 제외 <p>※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방과후아카데미 출석부 필히 확인</p> <p>※ 주의 :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지표의 법 위반여부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율'과 다음에 유의 - 연간 전체 이용 인원 대비 청소년 외의 연간 이용자가 40%를 초과할 경우 법 기준 위반임. (위 평정기준에서 청소년이용율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이용가능인원 : 수용(숙박)정원 × 운영일수 · 청소년 외의 이용자수 : 전체이용자수 - 청소년이용자수 <p>○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안·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p>○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평가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표 II-2.1.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의 안전 관리)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2 이용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0)	평가요소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td> <td></td> </tr> <tr> <td>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 여부</td> <td></td> </tr> <tr> <td>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 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 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 제반 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별도의 공통양식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반영 													
	<p>*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p>													

	<p style="text-align: center;">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p>[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평가자료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표 II-2.2.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별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총점 10점			
	우 수(4)	총점 6점~9점			
	보 통(3)	총점 3점~5점			
	매우미흡(1)	총점 0점			
평가요소	매뉴얼 구비여부	×	내용의 체계성	총점	
	- 단위 프로그램 매뉴얼이 없음 0점	×	- 형식적 1점	=	
	- 단위 프로그램 매뉴얼을 일부 구비 3점		- 체계적 2점		
	- 단위 프로그램 매뉴얼을 모두 구비 5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과 체계성을 평가함 •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이란 2박3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3시간 또는 경우에 따라 4~6시간 이상의 단위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입소식, 퇴소식 포함)을 말하며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중 60%~99% 구비한 경우는 '일부 구비', 60% 미만 시 '없음'으로 적용 - 형식적 수준이란 1~2매 내외의 개요 수준의 매뉴얼을 의미함 - 체계적 수준이란 수련활동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도안 및 워크시트, 기자재 및 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함(예: 인증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해당됨) * 지도안 포함내용 : 활동시기, 대상인원, 소요시간, 활동목표 및 활동개요, 준비물, 활동단계 (도입전개 마무리)별 활동내용 및 활동장비, 유의사항, 안전 및 유의사항, 담당자 등 * 다른 직원이 프로그램을 대신 맡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평가자료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현황 및 매뉴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확인서(선정문서 또는 상장)			

표 II-2.2.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의무 이행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련활동(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등)은 모두 인증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함.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을 모두 인증을 받은 후에 운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이 없는 경우)
	매우미흡(0)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련활동을 한 개 이상 인증 받지 않고 운영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청소년 참가인원 150인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등)을 인증 받은 후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 제2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함. - 평가기간동안에 1회 이상 운영된 수련활동 중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만을 대상으로 실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함. - 평가대상 시설에서 인증대상 수련활동의 유무 및 인증 여부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를 진행하되, 평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수련활동 사전신고 내용 및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위험도, 150인 이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진행함. - 인증활동 운영실적은 e-청소년에 등재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 수련원 운영 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이 없는 경우는 5점으로 부여함. • 평가제외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기간 중(2년간)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 중 인증을 받아야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인증대상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구 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평가자료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보고서

표 II-2.2.3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배점	2026년	2027년
	1) 지도인력의 전문성이 있다	3	1.5 (0점 / 1.5점.)	1.5 (0점 / 1.5점)
	2) 단위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	1.0 (0점 / 1점)	1.0 (0점 / 1점)
	총점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인력의 전문성 인정 기준 : 전문성 확인을 위하여 단위 프로그램별로 담당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갖춘 자, 혹은 국가검정 자격을 갖춘 자, 해당 프로그램 관련 연수과정 수료(이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연도별로 1.5점 부여 - 단위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 :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서화하였을 경우 연도별로 1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전체 수련활동 종료 후 일괄적으로 조사가능 ※ 인터뷰나 면담과 같은 질적 조사도 인정 * 평가대상 기간인 2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예: 이용 청소년 수가 0명, 기타 시설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2)번 요소항목의 연도별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부여함. * 학교단체수련활동의 경우, 학교 측에 제출한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한 경우도 인정하지만, 만족도 조사지 분석 자료가 없으면 불인정함. 			
평가자료	단위프로그램현황(인력 포함), 평가 및 연수일지,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참가 현황 및 특이사항 관리대장 등 관련 문서			

표 II-3.1.1 인사 및 조직 (직원 확보 수준)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1 직원 확보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 5% 이상	미흡(2) 평균 2%~2.9%													
	우수(4)	평균 4%~4.9%	매우미흡(1) 평균 1.9% 이하													
	보통(3)	평균 3%~3.9%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 (A) 전체직원 확보율 $\frac{2026년\ 1월\ 1일\ \sim\ 2027년\ 12월\ 31일\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숙박 정원 ()명} \times 100 = []\ %$ (B) 정규직원 확보율 $\frac{2026년\ 1월\ 1일\ \sim\ 2027년\ 12월\ 31일\ 월평균\ 정규\ 직원수()명}{숙박 정원 ()} \times 100 = []\ %$ (A)확보율 + (B)확보율 / 2 =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정규직원 + 비정규직원(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보험종류</th> <th style="width: 60%;">내 용</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rowspan="3">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건강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고용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 <td></td> </tr> </tbody> </table> •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범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 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는 정규직에 포함 * 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구분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정규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미확보한 경우는 육아휴직자는 정규직원 수와 전체직원 수에 미포함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정규직원 수, 전체직원 수에 각 1명으로 인정 * 특정 월의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중간 퇴직자)는 당월 직원 인력으로 인정 * 동일 재단 내 파견근무자의 경우 해당 시설에 상근하며 특정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 수행시 정규직으로 인정하되, 다른 기관의 업무 겸직할 경우(재단내 다른 업무 겸직)는 정규직에서 제외, <p>- 정규직원 제외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2년 이하 모두)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직원을 말함. * 수련원 내 간접 계약직원(위생, 식당, 시설관리 등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수련관 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 범위에서 제외(위탁 재단의 관리직원 등) * 계약이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근무사실 확인은 기존 근무계약서나 기 지급한 급여표 등을 통해 확인. * 시설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시설 내부 부서로 운영할 경우에도 제외(인건비 자원 기준, 단 수련관 인건비에 의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수련관 직원에 포함) <p>- 숙박정원 : 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숙박정원을 의미</p> <p>※ 평가기간 내 숙박정원 변경 시 평균값 적용(소수점 2자리 반올림)</p> <p>※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숙박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진행</p>
<p>평가자료</p>	<p>연간 직원명단 및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지도사자격증</p>

표 II-3.1.2. 인사 및 조직(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수용정원에 부합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2028년 현장평가 방문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매우미흡(0)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법인에서 파견한 지도사가 법인 업무와 겸직이 아니라 해당 수련시설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인사발령, 업무분장 등) 하면 배치기준에 포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 제외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배치 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PM/SM) 운영을 위한 정규직계약직 모두 제외 																					
	<p>* 평가기간 중 휴업기간은 제외, 모집 공고기간은 인정 (평가기간 중 한 시점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준수)</p> <p>[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원기준 (수용정원)</th> <th>기본최소인원</th> <th>추가최소인원</th> <th>배치기준 (최소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명~500명</td> <td>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td> <td>-</td> <td>2인 이상 (급별 기준)</td> </tr> <tr> <td>501명~749명</td> <td>상동</td> <td>1급 1인 이상</td> <td>3인 이상</td> </tr> <tr> <td>750명~999명</td> <td>상동</td> <td>2인 이상 (1급1인 포함)</td> <td>4인 이상</td> </tr> <tr> <td>1,000명~1,249명</td> <td>상동</td> <td>3인 이상 (1급 1인 포함)</td> <td>5인 이상</td> </tr> </tbody> </table>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1급 1인 이상	3인 이상	750명~999명	상동	2인 이상 (1급1인 포함)	4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3인 이상 (1급 1인 포함)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1급 1인 이상	3인 이상																			
750명~999명	상동	2인 이상 (1급1인 포함)	4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3인 이상 (1급 1인 포함)	5인 이상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표 II-3.1.3 인사 및 조직(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확보	
평가지표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2028년 현장평가 방문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 (4)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하고 평가 기타 항목 중 2개 항목 준수
	보 통(3)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에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 조 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p>[참고사항] 성평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법적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연구

	<p>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p>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p>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p>○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p>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p>

표 II-3.2.1 인사 및 조직(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25시간 이상
	우 수(4)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보 통(3)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미 흡(2)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매우미흡(1)	10시간 미만
평가요소	$\frac{2026년1월1일 \sim 2027년 12월 31일 \text{ 전체 직원의 직무연수 총 참여시간()시간}}{2026년 1월 1일 \sim 2027년 12월 31일 \text{ 월평균 전체 직원 수()명}} = [\quad] \text{시간}$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전문성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함. • 직무연수 대상 전체 직원 수 범위 : 3.1.1의 전체직원 범위에서 미화, 경비, 운전, 조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직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정규직원 + 비정규직원(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으로 이에는 청소년지도사 외에도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직원 등도 포함되며, 회계직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시간도 포함됨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및 외부 직무연수 모두 포함 - 내부연수 : 외부강사 초청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을 말함 - 외부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직무연수과정(직무 관련 법정 의무교육 포함)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명칭 및 목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무연수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는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 이수시간의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은 직무연수 참여시간 기준은 1일 8시간, 반일 4시간으로 함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 포함)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 - 해외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간 퇴사자의 교육연수 참여시간 포함 - 자격인정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자격 급수 향상에 따른 자격 연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인정 -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관련 기안문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학습, 관련 유튜브 지정 채널 등)의 학습시간은 50% 인정 • 직무연수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해당 직종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진행되는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예: 성폭력예방교육 등)은 제외 - 수련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회의는 제외 - 직무연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여행 또는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인정대상에서 제외 - 정책토론회 형태로 운영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의 참가 또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사업) 설명회 참가는 제외 - 출산 및 육아휴가로 인해 장기간(1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대상직원에서 제외
<p>평가자료</p>	<p>연간 직원 직무연수계획, 출장명령서, 내부기안, 수료증, 연수시간 등 관련 문서</p>

표 II-3.2.2 인사 및 조직(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2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평정기준	요소항목	평정기준
		모두 확인함
		모두 확인하지 않음
	1) 성범죄 경력 확인	3
2)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3	0
	총점 () 점	
평가요소	• 전체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유무에 대해서 현장 방문시 확인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시설에 상시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경력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임. -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 미흡 '0'점 평정 • 직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2026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수련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일용직, 강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함 <p>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p>	

	<p>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3. 4. 11.></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p> <p>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p> <p>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p> <p>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p>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p>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3. 4. 11.></p> <p>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p> <p>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p>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내용 추가 설명</p>
평가자료	<p>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표 II-3.2.3 인사 및 조직(직원의 복리후생)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3 직원의 복리후생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11개 이상 시행																												
	우 수(4)	평가요소 중 9~10개 시행																												
	보 통(3)	평가요소 중 6~8개 시행																												
	미 흡(2)	평가요소 중 4~5개 시행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3개 이하 시행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td> <td></td> </tr> <tr> <td>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정기적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td> <td></td> </tr> <tr> <td>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td> <td></td> </tr> <tr> <td>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7)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td> <td></td> </tr> <tr> <td>8)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9)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10)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11)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td> <td></td> </tr> <tr> <td>1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td> <td></td> </tr> <tr> <td>13)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8)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1)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3)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8)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1)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3)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 관리)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정규직 및 계약직원, 배치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SM) 그 가족의 복리후생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자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그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인정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3)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면 																													

	<p>인정(우수직원 국내외연수 및 포상금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6)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7) 직원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8) 상여금 및 성과급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 연봉제의 경우에 관련 증빙 확인 시 인정 9) 가족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10)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대상 : 청소년수련원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평가자료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관련문서

표 II-4.1.1 시설 및 안전(시설기준)

평가항목	4.1 시설환경	
평가지표	4.1.1 시설기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준수유지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평가요소 시설기준 모두) 준수
	매우미흡(0)	법적 기준(평가요소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미 준수
평가요소	• 법적 기준준수 여부	
	구 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 (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 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강 의 실	1실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 수련활동장	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국제 감각 함양 중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의자탁자 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한다.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업소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p>평가내용</p>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2(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확인함 <p>※ 필히 청소년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등록)와 현장과의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의 어느 한 시설(설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기준 미준수로서 '0'점으로 평정 함</p> <p>※ 2005년 이전에 설립·운영되는 수련원은 당시의 법적 기준을 준용 (1996년 설립기준 적용)</p>
<p>평가자료</p>	<p>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된 일람표), 총별 도면, 시설현황자료</p>

표 II-4.1.2 시설 및 안전(생활관의 쾌적성)

평가항목	4.1 시설환경	
평가지표	4.1.2 생활관의 쾌적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에게 신선하고 편안한 잠자리 마련 등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 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 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 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 불량
	1) 객실 청결상태	
	2) 객실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3) 침구류 관리 상태	
	4) 화장실(샤워장 포함) 청결상태	
	5) 화장실(샤워장 포함)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6) 객실·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7) 생활관 복도 내 청결상태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생활관(전체 객실)의 청결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벽, 천정, 바닥 등의 상태(곰팡이 및 얼룩, 불편한 냄새 등) 그리고 침구류 등이 불량(얼룩, 불편한 냄새)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작동 불량, 파손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생활관 복도 중 한 개의 층이 복도 상태(청결상태 및 복도 내 조명의 밝기 상태, 비상구 표시 여부, 객실번호표, 숙박정원표시여부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평가자료	각종 관리대장 및 체크리스트, 현장방문 평가	

표 II-4.2.1 시설 및 안전(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1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7년 12월 31일 이전		
평정기준	평가점수\구분	가(임시)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임시)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우우수(5)	7개 항목 이상 해당	6개 항목 이상 해당
	우 수(4)	6개 항목 해당	5개 항목 해당
	보 통(3)	5개 항목 해당	4개 항목 해당
	미 흡(2)	4개 항목 이하 해당	3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재난대응계획 미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재난대응계획 미수립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안전관리계획서에 가(임시)건축물에 대한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		
	4) 안전관리계획서에 위해시설물 발견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나 재난발생시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안전관리계획서에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8) 재난대응계획서의 내용이 재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평가내용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체관리대장을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 단순 소방계획서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간주할 수 없음. - 재난대응계획서는 재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상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시설의 특성 및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재난대응 계획서 등 현장실사 기준

표 II-4.2.2 시설 및 안전(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1일 ~ 2027년 12월31일																				
평정기준	매우 우수(5)	5개 교육 모두 실시																			
	매우 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 실시																			
평가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2026년</th> <th style="width: 20%;">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1) 성희롱예방교육</td> <td></td> <td></td> </tr> <tr> <td>2) 개인정보보호법교육</td> <td></td> <td></td> </tr> <tr> <td>3) 산업안전보건교육</td> <td></td> <td></td> </tr> <tr> <td>4) 장애인인식개선교육</td> <td></td> <td></td> </tr> <tr> <td>5)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2026년	2027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요소항목	2026년	2027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p>◆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 평가의 중점 사항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어느 한해라도 미 실시의 경우에는 미 실시로 평가</p>																					
<p>•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p>																					
<p>• 교육 인정범위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평가요소 3)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제외(실시로 인정) - 식당 등 하청업체의 직원이 시설에 상주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육은 하청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p>																					
<p>- 제시된 5개 의무교육 이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의무교육(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 경우 평가지표 5.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관련</p>																					

가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무교육 제외범위

- 안전 분야별(전기, 가스 등)로 직원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제시된 5개 이외의 특정 직무 및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수강은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 수련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성)으로 구성된 사업
-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p>*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외</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p>* 장애인학대에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p> <p>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평가자료</p>	<p>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p>

표 II-4.2.3 시설 및 안전(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1일 ~ 2027년 12월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기준	점 수	
		2026년	2027년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1년 12회)	2.5	2.5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일부 보고	1.5	1.5
	자체 안전점검 일부 실시 및 지자체 미보고	0	0
평가요소	•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내용	<p>•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자체안전점검 및 지자체보고 관련 문서(평가자료)를 확인하고 평정기준에 따라 점수부여.</p> <p>• 평가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자체 청소년수련원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여부 - 공식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 신규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등록 이후 안전점검 실적으로 평가 <p>※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 자체적인 내부결재를 진행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표 II-4.2.4 시설 및 안전(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8년 방문평가시 현재 	
평정기준	5점	2026년부터 2028년 방문평가시 현재까지 모두 보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
	0점	2026년부터 2028년 방문평가시 현재까지 일시라도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가입 기준에 미달
평가요소	평가기간 내 각 년도(2026~2027년) 및 2028년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3개년 모두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확보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 평정함.(다만, 타 보험의 경우에도 평가요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평가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23.8.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1억5천만원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할 경우 0점 처리)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담보내역별 보상한도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상 1사고당 총보상 한도액이 빈칸이거나 무제한 또는 숫자로 9999999999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총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인정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안전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평가자료	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등

표 II-4.2.5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5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 (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시설 운영대표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2) 시설 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안전하다		5	4	3	2	1
	4) 안전을 위협할만한 시설의 위험요소가 없다		5	4	3	2	1
	5)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종사 주요 직무관련 법정 의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은 제외) - 활동공간의 안전성 정도 - 위험요소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1점 부여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p> <p>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표 II-5.1.1 시설운영 발전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이행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발전	
평가지표	5.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평가방향	평가대상 시설은 이전에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법적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평가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모두 이행
	보 통(3)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부분 이행
	미 흡(0)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로 판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 기존에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과 개선 조치한 내용을 비교하여 평정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 사항 중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평정함. 이전 평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던 시설과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 우수(5)로 평정 	
평가자료	시설별 평가결과보고서, 개선조치한 지표 입증 자료	

표 II-5.1.2 시설운영 발전(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통(3) 시설 발전 노력이 보통임
	부족(2) 법 관련 11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매우부족(1) 법 관련 11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1개 중 평점 결과 법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 •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1개 중 평점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를 확인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11개 지표 중 1개 이상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가점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시(2020년 평가부터 보수교육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 명칭이 표현상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 소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인재개발수련원 등)과 수탁법인의 소유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이 부실한 경우 평가위원 재량 - 수련시설(자연권)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 사유 - 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p>평가자료</p>	<p>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p>

2. 2028년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10개 항목 - 28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III-1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운영 및 관리체계 (12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2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체계	8	1.2.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5	0.4	2	
			1.2.3 회계관리의 체계성	5	0.4	2	
			1.2.4 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수준	5	0.8	4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8점)	2.1 청소년 이용	13	2.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5	0.8	4	●
			2.1.2 이용 청소년의 안전관리	5	1.0	5	●
			2.1.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0.8	4	
	2.2 프로그램 의 제공	5	2.2.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1.0	5	
3. 인사 및 조직 (15점)	3.1 직원 확보	7	3.1.1 직원 확보 수준	5	0.6	3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0.4	2	●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0.4	2	●
	3.2 직원 운영	8	3.2.1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0.8	4	●
			3.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8	4	●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4. 시설 및 안전 (45점)	4.1 시설관리	18	4.1.1 연간 시설 가동률	5	0.4	2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및 접근성	5	0.4	2	●	
			4.1.3 시설 개선 노력	5	0.8	4		
			4.1.4. 시설 관리의 적정 성	- 숙박실의 적정성	5	0.4	2	●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5	0.4	2	●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5	0.4	2	●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5	0.4	2	●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5	0.4	2	●		
	4.2 시설 운영관리	9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5	0.6	3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5	0.6	3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5	0.4	3		
	4.3 안전 및 위생관리	18	4.3.1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5	1.0	5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0.6	3	●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6	3	●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5	0.6	3		
4.3.5 안전교육 및 관리			5	0.8	4	●		
5. 시설운영 발전 (10점)	5.1 시설운영 발전	10	5.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 개선 조치 이행 수준	5	1.0	5		
			5.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 III-1.1.1 운영 및 관리체계(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전용시설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7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 2021년부터 2027년)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점수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6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유스호스텔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청소년 정책목표와 기타 운영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한 경우 인정 - 평가요소 3): 분야별 추진계획이라 함은 조직, 프로그램, 안전, 재난대책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의미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스텔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유스호스텔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27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스호스텔의 발전계획 기간이 2027년 12월로 종료되어 202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분원 형태의 시설의 경우 본원 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 분원의 중장기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평가자료	(중·장기)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

표 III-1.1.2 운영 및 관리체계(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수련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2027년 연간 운영계획														
평정점수	• 전체 평균점수 : 전체 평균 ()점(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5	4	3	2	1
	연도별 평균 점수					(A) 점					(B) 점				
총점 = 24년평균 점수(A) + 25년평균 점수 (B) / 2 = 전체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연간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스호스텔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평가자료														
연간(2026, 2027)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서															

표 III-1.2.1 운영 및 관리체계(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만족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유스호스텔 명의의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스텔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의 제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 운영규정 범위 및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획책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평가요소 2)의 경우 관련 자체적인 규정 관련 위원회 등(이사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요소 3)의 경우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5종 이상의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경우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 평가요소 5)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수련관은 제외(신고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또는 위탁에 관계없이 청소년수련관별로 자체적인 명의로 고유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동일 재단 산하에 다수의 수련관, 문화의집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재단내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는 인정함. 1) 지자체 직영 및 지자체 공단/지자체 산하 운영법인(재단) 소속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이 직영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재단 등 법인 소속 시설인 경우, 관련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또는 재단 규정 등도 인정하여, 이 경우 평가요소 1) 수련원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도 인정함. - 평가요소 3)의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실제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이거나 독자적인 사무편람, 운영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4)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실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2) 위탁시설/(청소년단체 위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의 규정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이 규정화된 경우 인정(내용과 관리 체계를 평가) - 수탁한 수련시설 자체의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 불인정 <p>※ 위·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규정(정관 성격의 규정을 말함) 재개정 시 시설 자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한 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p>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평가자료	유스호스텔 운영규정집,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등

표 III-1.2.2 운영 및 관리체계(회계관리의 체계성)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회계관리의 체계성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가지 항목 이상 해당 또는 회계법인 감사실시
	우 수(4)	3가지 항목이 해당
	보 통(3)	2가지 항목이 해당
	미 흡(2)	1가지 항목이 해당
	매우미흡(1)	0가지 항목이 해당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 관련 필요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 회계연도 후에 외부의 회계법인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평가요소에 상관 없이 5점 부여(2년에 1회 감사를 받을 경우 3점부여)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 유스호텔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가 비치 여부와 수입 및 지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에 공개여부를 평가함 	
평가자료	회계장부(원장), 회계 및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외부감사실적 자료, 예·결산 자료 등	

표 III-1.2.3 운영 및 관리체계(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3 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가지 항목 해당
	보 통(3)	2~3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1가지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2가지 방법 이상)	
	4)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가내용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유스호스텔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 4)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란 홍보내용이 시설 및 참가자 모집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나 주요성과를 알리는 홍보(청소년의 활동 참여의 중요성, 참여 후 긍정적 변화 등)를 의미함.		
- 평가요소 5)의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농산어촌지역 등 현장실습 참여 자체가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음.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관광 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등	

표 III-2.1.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연간 전체 숙박 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 숙박 이용자 수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2026~2027년도 각 연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5만명 미만인 경우	2026~2027년도 각 연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5점	60% 이상	50% 이상
	4점	50% ~ 59%	40% ~ 49%
	3점	40% ~ 49%	30% ~ 39%
	2점	30% ~ 39%	20% ~ 29%
	1점	30% 미만	20% 미만
평가요소	$\frac{\text{연간 청소년 숙박자 수 ()명}}{\text{연간 전체 숙박자 수 ()명}} \times 100 = (\quad \quad \quad)\%$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유스호스텔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이용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이용자) 수에서 제외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숙박자 수에 포함함.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총 이용자 수 산정 : 숙박일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 산정의 예 : 2026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26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2박) + (100명 × 2박) = 총 숙박자 수 = 600명 <p>※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필히 확인</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p>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p> <p>※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지표의 법 위반여부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율’과 다음 유의 - 연간이용가능인원 대비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40%를 초과할 경우 법 기준 위반임. (위 평정기준에서 청소년이용율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이용가능인원 : 수용(숙박)정원 × 운영일수 · 청소년 외의 이용자수 : 전체이용자수 - 청소년이용자수
<p>평가자료</p>	<p>이용현황관리대장,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p>

표 III-2.1.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이용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2 이용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0)	평가요소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8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td> <td></td> </tr> <tr> <td>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td> <td></td> </tr> <tr> <td>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 제반 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 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공통양식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 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공통양식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반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평가자료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표 III-2.1.3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가지 항목 모두 해당
	3점	1-2가지 항목 해당
	1점	해당 항목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이용청소년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이용청소년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음	
3) 이용청소년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운영(프로그램 포함) 개선에 반영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유도 * 학교단체(수학여행 등), 청소년단체 등의 경우 해당 학교나 단체 측에 제출한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한 경우도 인정 - 일차적으로 시설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타 이용객의 만족도 관련 조사는 추가적으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터뷰나 면담과 같은 질적 조사도 인정 	
평가자료	자체 만족도 조사지 샘플,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증빙자료 등	

표 III-2.2.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지역 여행정보 제공)

평가항목	2.2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지표	2.2.1 지역 여행정보 제공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책자 및 브로슈어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여 지역의 여행 및 관광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개 해당								
	3점	1~2개 해당								
	1점	해당 항목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외부기관이 작성한 여행정보 자료 비치</td> <td></td> </tr> <tr> <td>2) 유스호스텔 홈페이지에서 지역 여행정보 제공</td> <td></td> </tr> <tr> <td>3) 유스호스텔 자체 작성한 여행정보 자료 비치</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외부기관이 작성한 여행정보 자료 비치		2) 유스호스텔 홈페이지에서 지역 여행정보 제공		3) 유스호스텔 자체 작성한 여행정보 자료 비치	
	요소항목	O . X 여부								
	1) 외부기관이 작성한 여행정보 자료 비치									
	2) 유스호스텔 홈페이지에서 지역 여행정보 제공									
3) 유스호스텔 자체 작성한 여행정보 자료 비치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여행정보 자료 : 외부 기관에서 제작한 여행정보 - 자체 여행정보 : 해당 유스호스텔에서 제작한 지역 여행 관련 책자 혹은 브로슈어 등 									
	평가자료	여행정보 자료 비치 및 정보제공 여부 현장 실사								

표 III-3.1.1 인사 및 조직(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1 직원 확보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숙박정원에 부합하는 규모의 직원들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평가시점(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 5% 이상	미흡(2)	평균 2%~2.9%											
	우수(4)	평균 4%~4.9%	매우미흡(1)	평균 1.9% 이하											
	보통(3)	평균 3%~3.9%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 														
	(A) 전체직원 확보율 $\frac{2026년1월1일 \sim 2027년 12월31일 \text{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text{숙박정원()명}} \times 100 = [\quad] \%$														
	(B) 정규직원 확보율 $\frac{2026년1월1일 \sim 2027년 12월31일 \text{ 월평균 정규직 직원수()명}}{\text{숙박정원()}} \times 100 = [\quad] \%$														
$(A)\text{확보율} + (B)\text{확보율} / 2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 border="1"> <thead> <tr> <th>보험종류</th> <th>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건강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고용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 </tr> </tbody> </table>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대상 범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는 정규직에 포함 * 2026년 공무원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구분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정규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 정규직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미확보한 경우는 육아휴직자는 정규직원 수와 전체직원 수에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p>미포함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정규직원 수, 전체직원 수에 각 1명으로 인정</p> <p>* 특정 월의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중간 퇴직자)는 당월 직원 인력으로 인정</p> <p>- 정규직원 제외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기간(2년 이하 모두 포함)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 유스호스텔 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대상범위에서 제외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정규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 유스호스텔 내 간접 계약직원(위생, 식당, 환경, 시설관리 등)도 정규직원에서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계약이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근무사실 확인은 기존 근무계약서나 기 지급한 급여표 등을 통해 확인함. * 시설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시설 내부 부서로 운영할 경우에도 제외(인건비 재원 기준, 단 수련관 인건비에 의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수련관 직원에 포함) * 동일 재단내 파견근무자의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와 겸직할 경우는 정규직에서 제외하되, 해당 시설에 상근하며 특정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 수행시 정규직으로 인정 <p>- 숙박정원 : 시설 등록증에 기록된 숙박정원을 의미</p>
평가자료	연간 직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 보험 지급 관련 자료

표 III-3.1.2 인사 및 조직(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2028년 현장평가 방문시 까지													
평정기준	매우 우수(5)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매우 미흡(0)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 준수												
평가요소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p>•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법인에서 파견한 지도사가 법인업무와 겸직이 아니라 수련시설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배치기준에 포함됨. <p>•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 제외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배치 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PM/SM) 운영을 위한 정규직계약직 모두 제외 <p>* 평가기간 중 휴업기간은 제외, 모집 공고기간은 인정 (평가기간 중 한 시점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준수)</p> <p>[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인원기준 (수용정원)</th> <th>기본 최소인원</th> <th>추가 최소인원</th> <th>배치기준 (최소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명~500명</td> <td>3급 1인 이상</td> <td>-</td> <td>3급 1인 이상</td> </tr> <tr> <td>500명 초과</td> <td>3급 1인 이상</td> <td>2급 지도사 1인 이상</td> <td>3급 1인, 2급 1인 이상</td> </tr> </tbody> </table>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 최소인원	추가 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3급 1인 이상	-	3급 1인 이상	500명 초과	3급 1인 이상	2급 지도사 1인 이상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 최소인원	추가 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3급 1인 이상	-	3급 1인 이상											
500명 초과	3급 1인 이상	2급 지도사 1인 이상	3급 1인, 2급 1인 이상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표 III-3.1.3 인사 및 조직(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확보													
평가지표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텔 시설운영 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2028년 현장평가 방문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 (4)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하고 평가 기타 항목 중 2개 항목 준수												
	보 통(3)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점검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td> <td></td> </tr> <tr> <td>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직제규정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td> <td></td> </tr> <tr> <td>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유스호텔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유스호텔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참고사항] 성평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 (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사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외 (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연구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

	<p>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p>-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p>○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유스호스텔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표 III-3.2.1 인사 및 조직(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1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평정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평정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모두 확인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모두 확인하지 않음</th> </tr> </thead> <tbody> <tr> <td>1) 성범죄 경력 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2)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총점 () 점</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모두 확인함	모두 확인하지 않음	1) 성범죄 경력 확인	2	0	2)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2	0	총점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모두 확인함	모두 확인하지 않음														
1) 성범죄 경력 확인	2	0														
2)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2	0														
총점 () 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 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임.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유무에 대해서 현장 방문시 확인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시설에 상시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는 법적 의무사항임.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 미흡 '0'점 평정 직원 대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한 경우 전반적 발전 노력 수준 지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028년부터는 별도 평가요소로 추가 예정) 직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직원 : 2026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수련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일용직, 강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갈음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3. 4. 11.>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3. 4. 11.>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내용 추가 설명

평가자료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
------	--

표 III-3.2.2 인사 및 조직(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 우수(5)	5개 교육 모두 실시	
	매우 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실시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6년
	1) 성희롱예방교육		2027년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 평가의 중점 사항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어느 한해라도 미실시의 경우에는 미실시로 평가</p> <p>•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p> <p>• 교육 인정범위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평가요소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제외(실시로 인정) - 식당 등 하청업체의 직원이 시설에 상주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육은 하청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제시된 5개 의무교육 이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각종 의무교육(예: 장애인 성범죄</p>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 경우 평가지표 5.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관련 가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무교육 제외범위

- 안전 분야별(전기, 가스 등)로 직원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제시된 5개 이외의 특정 직무 및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수강은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 청소년수련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성)으로 구성된 사업
-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p> <p>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외</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p>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 장애인학대에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p> <p>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표 III-4.1.1 시설 및 안전(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1 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의 연간 서비스 제공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85% 초과
	4점	75% 초과 ~ 85% 이하
	3점	65% 초과 ~ 75% 이하
	2점	55% 초과 ~ 65% 이하
	1점	55% 이하
평가요소	$2026 \text{ 연간시설가동률} = \frac{\text{연간 운영일 수}}{365} \times 100 = (\quad) \%$ $2027 \text{ 연간시설가동률} = \frac{\text{연간 운영일 수}}{365} \times 100 = (\quad) \%$ <hr/> $\text{합계}(2026+2027) = \quad \% , \quad \text{평균(합계/2)}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스호스텔의 연간 서비스 제공 일수를 중심으로 판정 • 일수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운영일 수 :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한 일 수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경우 해당 휴관일 수만큼 분모에서 차감 - 휴관일 수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자료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문서), 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문서 등	

표 III-4.1.2 시설 및 안전(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여행청소년 등 이용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1), 2), 3) 충족								
	3점	1), 2) 충족								
	0점	1) 또는 2) 미충족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td> <td></td> </tr> <tr> <td>2) 당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td> <td></td> </tr> <tr> <td>3) 주변에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문화 관광시설 등이 있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하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		3) 주변에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문화 관광시설 등이 있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									
3) 주변에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문화 관광시설 등이 있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p>									
	<p>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p> <p>"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p>									
평가자료	현장 실사 및 주변 환경 설명,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현황 등									

표 III-4.1.3 시설 및 안전(시설개선 노력)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3 시설 개선 노력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전용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보강)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시설개선 실적이 있음
	3점	시설개선 계획이 있으나 개선 실적이 없음
	1점	시설개선 계획이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개선 계획 구비 여부 시설개선 실적 구비 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중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개선계획을 구비하고 실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보강 및 개보수 비용인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기금용자 및 개인용자 모두 포함 신규시설건립비용, 부지확보,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 등 시설환경에 투자한 비용 포함 	
평가자료	시설 중장기관리계획, 연차별 관리운영계획, 개보수 실적 현황 등	

표 III-4.1.4 시설 및 안전(숙박관리의 적절성-숙박실의 적정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숙박실의 적정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은 법적 기준에 맞게 조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법적 기준(평가요소 시설기준 모두) 준수				
	0점	법적 기준(평가요소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미 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4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숙박실 관련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숙박실 관련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	
요소항목	O . X 여부					
숙박실 관련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						
평가내용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법적 기준준수 여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이어야 한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실·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자료	숙박실 현황 자료, 숙박실 현장실사					

표 III-4.1.4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자기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자기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기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자기취사장 구비하고 법적 기준 충족
	3점	자기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기취사장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취사장 구비 및 법적기준 충족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기준준수 여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자기취사장 이용자 현황, 자체 운영규정, 기타 관련 자료

표 III-4.1.4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정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8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별도의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고 제공 자료가 있음
	3점	별도의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으나 제공 자료가 없음
	0점	별도의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 및 제공 자료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법적 기준준수 여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한 인터넷 활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용 청소년들 간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대화·정보실 운영규정, 대화·정보실 구비 기자재 현황 등	

표 III-4.1.4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이용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8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 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 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 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불량
	1) 화장실 청결상태	
	2) 화장실 비품 및 가구관리	
	3) 샤워실 청결상태	
	4) 샤워장 비품 및 가구관리상태	
	5) 세면장 청결상태	
	6) 세면장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7) 건물 내외부 청결상태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수질 검사표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화장지, 거울, 손 건조장치, 종이 타월 등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물품의 구비 여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위생시설 설치기준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자료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 비품 운영사항, 현장실사	

표 III-4.1.4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지도자실과 휴게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2개 모두 준수						
	0점	1개라도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3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독립적인 지도자실 설치</td> <td></td> </tr> <tr> <td>2) 독립적인 휴게실 설치</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독립적인 지도자실 설치		2) 독립적인 휴게실 설치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독립적인 지도자실 설치								
2) 독립적인 휴게실 설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함 청소년지도자들이 활동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이에 필요한 관련 기구와 비품을 갖추어야 함 							
평가자료	시설일람표, 시설 층별 평면도							

표 III-4.2.1 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등록증 게시, 정원표시, 방별 투숙기록 등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모두 준수										
	3점	3개 준수										
	1점	2개 이하 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3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td> <td></td> </tr> <tr> <td>2) 숙박실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개별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		2) 숙박실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		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별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												
2) 숙박실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												
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별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숙박실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함 방별 숙박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료	시설운영계획, 수련시설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개인이용실적 확인가능 자료											

표 III-4.2.2 시설 및 안전(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용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고 기준이 세부적임
	4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으나 세부적이지 않음
	0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도 운영기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함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시설 이용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자료	유스호스텔 이용수칙 및 안내문, 기타 증빙자료	

표 III-4.2.3 시설 및 안전(숙박정원 기준 준수 여부)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등록증 상에 표기된 숙박정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숙박기준 준수
	0점	숙박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체결된 계약서 내용과 숙박정원 비교 • 숙박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된 경우는 0점 처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됨 	
평가자료	수련시설등록증, 시설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 이용현황자료에 대한 세부근거자료 확인	

표 III-4.3.1 시설 및 안전(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1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7년 12월 31일 이전 		
평정기준	평가점수	가(임시)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임시)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우우수(5)	7개 항목 이상 해당	6개 항목 이상 해당
	우수(4)	6개 항목 해당	5개 항목 해당
	보통(3)	5개 항목 해당	4개 항목 해당
	미흡(2)	4개 항목 이하 해당	3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재난대응계획 미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재난대응계획 미수립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안전관리계획서에 가(임시)건축물에 대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		
	4) 안전관리계획서에 위해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안전관리계획서에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8) 재난대응계획서의 내용이 재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단순 소방계획서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간주할 수 없음. 재난대응계획서는 재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시설의 특성 및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재난대응계획서

표 III-4.3.2 시설 및 안전(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 2028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점 : 점 		
평정기준	기준	점수	
		2026년	2027년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1년 12회)	2.5	2.5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일부 보고	1.5	1.5
	자체 안전점검 일부 실시 및 지자체 미보고	0	0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여부를 평가함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p>※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 자체적인 내부결재를 진행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p>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표 III-4.3.3 시설 및 안전(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8년 방문평가 시 현재 	
평정기준	5점	2026년부터 2028년 방문평가시까지 모두 보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
	0점	2026년부터 2028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일시라도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가입 기준에도 미달
평가요소	평가기간 내 각 년도(2026~2027년) 및 2028년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3개년 모두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확보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 평정함.(다만, 타 보험의 경우에도 평가요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평가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23.8.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1억5천만원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할 경우 0점 처리)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담보내역별 보상한도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상 1사고당 총보상 한도액이 빈칸이거나 무제한 또는 숫자로 9999999999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총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인정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안전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p> <p>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p>평가자료</p>	<p>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p>

표 III-4.3.4 시설 및 안전(시설 청결도 및 위생상태)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관리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침구세트를 교체하여 청결도를 유지토록 하고, 조리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수범위 0점 ~ 5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불량
	1) 숙박실의 청결상태	2점	0점
	2) 화장실·세면장의 청결상태	1점	0점
	3)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상태	2점	0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구세트(침대시트 또는 이불 및 베개 커버) 및 숙소의 청소 상태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침구세트 청결 및 세탁 등에 대한 자체관리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조리실과 식당의 위생상태(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소독 장비, 환기시설,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 여부, 바닥·천장 등의 청소 상태, 조리자의 위생복·위생모장갑 착용 여부 및 청결도) 화장실·세면장·샤워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 관리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함 		
평가자료	관리매뉴얼 및 점검 시스템		

표 III-4.3.5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5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 (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시설 운영대표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2) 시설 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안전하다		5	4	3	2	1
	4) 안전을 위협할만한 시설의 위험요소가 없다		5	4	3	2	1
	5)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시설종사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종사 주요 직무관련 법정 의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은 제외) - 활동공간의 안전성 정도 - 위험요소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1점 부여 						

평가자료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p> <p>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표 III-5.1.1 시설운영 발전(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이행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발전	
평가지표	5.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평가방향	평가대상 시설은 이전에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법적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평가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모두 이행
	보 통(3)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부분 이행
	미 흡(0)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요소	•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로 판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 2026년에 실시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과 개선 조치한 내용을 비교하여 평정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사항 중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평정함. - 이전 평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던 시설과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 우수(5)로 평정 	
평가자료	시설별 평가결과보고서, 개선조치 한 지표 입증 자료	

표 III-5.1.2 시설운영 발전(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 통(3)	시설 발전 노력이 보통임
	부 족(2)	법 관련 11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매우부족(1)	법 관련 11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관련 지표 11개 중 평점 결과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 *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관련 5개 세부 평가지표(숙박실 적정성,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등 5개 세부지표) 중 1개 세부평가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4.1.4. 시설관리 적정성 지표를 법 기준 위반으로 판단함.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관련 지표 11개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를 확인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p>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p>• 가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11개 지표 중 1개 이상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가점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 - 국제연맹에 가입한 경우 -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시(2020년 평가부터 보수교육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함) <p>• 감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스텔의 명칭 : 표현상 유스호스텔이 아닌 것으로 오해 소지의 명칭(예; 콘도 혹은 리조트 등) 사용 시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수련시설(자연권)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 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3. 2028년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4개 영역 - 7개 항목 - 21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IV-1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 치	배점안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9점)	1.1 청소년 이용실적	4	1.1.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5	0.8	4	●
	1.2 프로그램	5	1.1.2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1.0	5	
2. 조직 및 인력 (18점)	2.1 조직운영	7	2.1.1 시설발전계획	5	0.6	3	
			2.1.2 시설 홍보 수준	5	0.8	4	
	2.2 인력구성	11	2.2.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5	1.0	5	●
			2.2.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0.8	4	●
			2.2.3 지도자의 윤리성	5	0.4	2	●
3. 시설 및 안전 (63점)	3.1 시설 및 설비수준	16	3.1.1 연간 시설 가동률	5	0.4	2	
			3.1.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1.0	5	●
			3.1.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1.0	5	●
			3.1.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5	0.8	4	●
	3.2 안전 및 위생관리	47	3.2.1 대피시설 설치 상태	5	1.0	5	●
			3.2.2 비상설비 설치 상태	5	1.2	6	●
			3.2.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및 재난대응 계획수립의 체계성	5	1.4	7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5	1.2	6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5	1.2	6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5	1.2	6	●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5	1.2	6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5	1.0	5	
4. 시설 발전 노력 (10점)	4.1 시설 발전 노력	10	4.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 개선 조 치 이행 수준	5	1.0	5	
			4.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 IV-1.1.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항목	1.1 청소년 이용실적	
평가지표	1.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기준	연간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자수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70% 이상
	우 수(4)	60% ~ 69%
	보 통(3)	50% ~ 59%
	미 흡(2)	40% ~ 49%
	매우미흡(1)	40% 미만
평가요소	$\frac{2026\text{년}\sim 2027\text{년}\ \text{연간}\ \text{청소년}\ \text{이용자}\ \text{수}\ (\)\ \text{명}}{2026\text{년}\sim 2027\text{년}\ \text{연간}\ \text{전체}\ \text{이용자}\ \text{수}\ (\)\ \text{명}} \times 100 = [\quad \%]$	
평가자료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야영장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부지 내 전체 공간 대상으로 시설 공간대관, 활동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야영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전체 이용자 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청소년 수는 이용자에 포함하되, 그 가족 수는 연간 전체 이용자(숙박자) 수에서 제외함.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주체별 범위 : 청소년야영장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숙박일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 - 산정의 예 : 2026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26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2박) + (100명 × 2박) = 총 숙박자 수 = 600명 • 평가위원은 현장방문 평가 시 특정 기간(특정 월 등)을 선정하여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표와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문서) 	

• 관련 규정

- 시설을 청소년활동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가 그 수련시설 연간 이용가능 인원수의 40/100 이내이어야 함

※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지표의 법 위반여부 판단 기준

-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률'과 다음 유의
- 연간이용가능인원 대비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40%를 초과할 경우 법 기준 위반임.
(위 평정기준에서 청소년이용률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계산방법
 - 연간이용가능인원 : 수용(숙박)정원 × 운영일수
 - 청소년 외의 이용자수 : 전체이용자수 - 청소년이용자수

표 IV-1.1.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항목	1.2 프로그램	
평가지표	1.1.2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기준	야영장 인근 자연환경 및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 우수(5)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준이 우수함
	우 수(4)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미 흡(3)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평가기간 중 인증프로그램을 보유했을 경우 평정기준의 매우 우수(5)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평정기준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운영 매뉴얼 및 활동지도안이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예시: 등산, 오리엔티어링, 래프팅, 카누, 수영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확인서(선정문서 또는 상장) 	

표 IV-2.1.1 조직 및 인력(시설발전계획)

평가항목	2.1 조직운영																						
평가지표	2.1.1 시설발전계획																						
평가기준	설립목적에 맞는 시설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계획의 대상기간 : 2027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 2021년부터 2027년)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점수	• 평정점수 : ()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th> <th colspan="2">평정기준</th> <th>○ 판정시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td> <td>X</td> <td>○</td> <td>2</td> </tr> <tr> <td>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td> <td>X</td> <td>○</td> <td>2</td> </tr> <tr> <td>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td> <td>X</td> <td>○</td> <td>1</td> </tr> <tr> <td>합계</td> <td colspan="2"></td> <td></td> </tr> </tbody> </table>	요소	평정기준		○ 판정시 배점	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2	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2	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X	○	1	합계					
요소	평정기준		○ 판정시 배점																				
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2																				
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2																				
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X	○	1																				
합계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청소년야영장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각종 계획서가 어떤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함. • 시설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한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시설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청소년야영장의 발전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27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27년 12월로 종료되어 202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위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중장기계획서, 경영목표, 각종 경영혁신 관련 추진실적 자료 등																						

표 IV-2.1.2 조직 및 인력(시설홍보수준)

평가항목	2.1 조직운영	
평가지표	2.1.2 시설 홍보 수준	
평가기준	시설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생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 우수(5)	2가지 이상 홍보자료가 있음
	보통(3)	1가지 홍보자료가 있음
	미흡(1)	홍보자료가 없음
평가요소	1) 홍보자료 생산 및 활동정도(언론보도, 리플렛, 카탈로그, 포스터, CD 등) 2) 홈페이지 구축운영 현황, 관광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평가자료	• 각종 홍보자료(언론보도, 리플렛, 포스터, CD 등), 홈페이지(게시판, 공지사항 등) 실적, 관련 관광 책자나 지도 등	

표 IV-2.2.1 조직 및 인력(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평가기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2028년 현장평가 방문시 까지 	
평정기준	매우 우수(5)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매우 미흡(0)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여부 (3급지도사 1명)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법인에서 파견한 지도사가 법인업무와 겸직이 아니라 수련시설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배치기준에 포함됨.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서류, 직원명부 등 <p>* 평가기간 중 휴업기간은 제외, 모집 공고기간은 인정 (평가기간 중 한 시점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야영장의 청소년지도사 미배치 허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기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2항 관련 별표 5)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사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표 IV-2.2.2 조직 및 인력(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2028년 현장평가 방문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 (4)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하고 평가 기타 항목 중 2개 항목 준수												
	보 통(3)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점검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td> <td></td> </tr> <tr> <td>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td> <td></td> </tr> <tr> <td>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원장, 센터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야영장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 조 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p>[참고사항] 성평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p>*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p>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사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연구 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p>○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야영장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표 IV-2.2.3 조직 및 인력(지도자의 윤리성)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3 지도자의 윤리성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중 채용한 직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자로서 필요한 법적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채용 직원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1인이라도 미확인 : 0점 / 전체 직원 확인 : 2점	
	채용 직원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여부	1인이라도 미확인 : 0점 / 전체 직원 확인 : 2점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2026년	2027년
		미실사: 0점 / 실시: 0.5점	미실사: 0점 / 실시: 0.5점
계 () 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합제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범위: 2026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포함) • 연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교육을 모두 포함)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 일지 등)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 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임.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유무에 대해서 		

- 현장 방문시 확인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시설에 상사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는 법적 의무사항임.
 -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 미흡 '0'점 평정
- 직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를 실시한 경우 '전반적 발전 노력 수준' 지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028년부터는 별도 평가요소로 추가 예정)

- 직원 범위
 - 전체 직원 : 수련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일용직, 강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
 -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3. 4. 11.>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3. 4. 11.>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표 IV-3.1.1 시설 및 안전(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1 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기준	시설의 연간 서비스 제공 비율(가동일 수 비율)이 높은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85% 초과
	4점	75% 초과 ~ 85% 이하
	3점	65% 초과 ~ 75% 이하
	2점	55% 초과 ~ 65% 이하
	1점	55% 이하
평가요소	$\frac{2026\text{년 가동일 수}}{270} \times 100 = [\quad] \%$	
	$\frac{2027\text{년 가동일 수}}{270} \times 100 = [\quad] \%$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 및 2027년 가동일 수(%)의 평균으로 평점함. 동계 3개월 제외한 이용일 수인 270일을 기준으로 함. 가동일 수의 경우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가동일로 산정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경우 해당 휴관일 수만큼 분모(270일)에서 차감 휴관일 수는 공식 문서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문서) 	

표 IV-3.1.2 시설 및 안전(활동시설 설치)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2 활동시설 설치여부	
평가기준	다양한 실외활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우수(5)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 외에 추가 활용 가능한 활동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보통(4)	야외집회장과 체육활동장이 설치되어 있음
	미흡(3)	야외집회장 또는 체육활동장이 없음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활동시설 설치현황(자연체험시설, 수영장, 챌린지 코스 등의 시설)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2)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실사, 시설관리대장 등 	

표 IV-3.1.3 시설 및 안전(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기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 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취사장 구비 여부 및 시설 실태 현장실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취사장의 시설 설비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 취사장 시설·설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IV-3.1.4 시설 및 안전(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평가기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5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비품 구비
	3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품 미비
	0점	화장실, 세면장 시설 중 하나라도 미설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및 세면장 관리 실태 현장 실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의 경우 남, 여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 (수질 검사표 등)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시설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표 IV-3.2.1 시설 및 안전(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1 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기준	폭우·폭설 등 급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우수(5)	대피시설이 있으며 법적 기준에 적합함
	보통(3)	대피시설이 있으나 형식적임
	미흡(0)	대피시설이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시설 설치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대피시설'의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 IV-3.2.2 시설 및 안전(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2 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기준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통신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우수(5)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함
	보통(3)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작동상태가 불량함
	미흡(0)	비상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 위험표지물 등) 설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의 작동유무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비상설비’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IV-3.2.3 시설 및 안전(긴급 상황 대비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및 재난대응 계획수립의 체계성	
평가기준	시설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대피시설 위치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이 안내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구비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긴급상황 대처 매뉴얼	3점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며 인식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음 2점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나 인식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음 0점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이 없음.
	재난대응 계획	2점 : 재난대응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0점 : 재난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점수 합계 : 긴급상황 대처 매뉴얼 점수 ()점 + 재난대응 계획 점수 ()점 = 총 ()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구비 및 게시 여부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관리 및 보관 상태 • 재난대응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소방계획서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간주할 수 없음. - 재난대응계획서는 재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뉴얼, 현장실사를 통한 안내문 게시 여부 확인 • 관련 계획서 	

표 IV-3.2.4 시설 및 안전(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기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와 비상연락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우수(5)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 상태 양호
	보통(3)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관리 상태 미흡
	미흡(0)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의 비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현장실사 	

표 IV-3.2.5 시설 및 안전(긴급후송대책 구축)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평가기준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5점	요소항목 3개 항목 해당
	3점	요소항목 2개 항목 해당
	0점	요소항목 1개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요소항목	O . X 여부
	1) 긴급후송대책 매뉴얼이 있다	
	2)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다	
	3) 후송차량이 정해져 있다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및 긴급후송대책 매뉴얼 	

표 IV-3.2.6 시설 및 안전(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기준	시설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8년 방문평가시 현재까지	
평정기준	5점	2026년부터 2028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모두 보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
	0점	2026년부터 2028년 방문평가시 현재까지 일시라도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준에 미달
평가요소	평가기간 내 각 년도(2026~2027년) 및 2028년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3개년 모두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확보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 평정함.(다만, 타 보험의 경우에도 평가요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평가요사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23.8.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1억5천만원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할 경우 0점 처리)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담보내역별 보상한도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상 1사고당 총보상 한도액이 빈칸이거나 무제한 또는 숫자로 9999999999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총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인정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안전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p> <p>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평가자료	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등
-------------	-------------------

표 IV-3.2.7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기준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2026년	2027년	
	직원 안전교육	직원 대상 안전교육 연 2회 실시	1.5	1.5
		직원 대상 안전교육 연 1회 실시	0.5	0.5
	이용자 안전교육	전체 이용자 중 50% 이상 안전교육 실시	1.0	1.0
		전체 이용자 중 50% 미만 안전교육 실시	0.5	0.5
직원 안전교육 또는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0	0	
평가요소	•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자료	• 안전교육 실적 자료(안전교육실시 기록대장),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표 IV-3.2.8 시설 및 안전(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기준	야영장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우수(5)	매우 청결함
	보통(3)	청결함
	미흡(0)	청결하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지, 자가 취사장의 청결도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관리 대장, 현장실사 	

표 IV-4.1.1 시설발전 노력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이행 수준)

평가항목	4.1 시설 발전 노력	
평가지표	4.1.1 이전 평가결과(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평가방향	평가대상 시설은 이전에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법적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평가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모두 이행
	보 통(3)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부분 이행
	미 흡(0)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요소	•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로 판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2026년에 실시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과 개선 조치한 내용을 비교하여 평정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사항 중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평정함. - 이전 평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던 시설과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우수(5)로 평정 	
평가자료	시설별 평가결과보고서, 개선 조치한 지표 입증 자료	

표 IV-4.1.2 시설 발전 노력(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4.1 시설 발전 노력	
평가지표	4.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기준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양 호(3)	보통임
	부 족(2)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매우부족(1)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0개 중 평점 결과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 •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0개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해당 지표의 개수를 확인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개 이상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가점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 -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시(2020년 평가부터 보수교육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함) •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